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일준일 : 2022.02.18)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1원 이상	최고금액					제한없음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 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적용이율 (연%,세전)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2022.02.18 현재 고시금리, 연%,세전)							
	유 형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확정급여형	1.24	1.49	1.83	2.07	2.28	2.31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1.14	1.39	1.73	1.97	2.18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율은 작성일 현재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입일의 고시금리에 따름 							
중도해지이율 (연%,세전)	경과기간	적용금리/적용률						
	3개월미만	0.10%						
	6개월미만	$\text{중도해지 기준금리} \times 50\% \times \text{경과월수} \div \text{계약월수}$						
	9개월미만	$\text{중도해지 기준금리} \times 60\% \times \text{경과월수} \div \text{계약월수}$						
	11개월미만	$\text{중도해지 기준금리} \times 70\% \times \text{경과월수} \div \text{계약월수}$						
	11개월이상	$\text{중도해지 기준금리} \times 80\% \times \text{경과월수} \div \text{계약월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기준금리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공시실>예금>예금금리>거치식>정기예금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2 | 거래 조건(계속)

<p>특별중도해지 이율 (연%,세전)</p>	<p>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 이율 적용 (단,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율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295 320 1455 506"> <thead> <tr> <th>경과기간</th> <th>적용금리^{주)}</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미만</td> <td>3개월 만기 이율</td> </tr> <tr> <td>3개월 ~ 6개월 미만</td> <td>6개월 만기 이율</td> </tr> <tr> <td>6개월 ~ 1년 미만</td> <td>1년 만기 이율</td> </tr> <tr> <td>1년 이상</td> <td>경과기간별 이율</td> </tr> </tbody> </table> <p>주)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p>	경과기간	적용금리 ^{주)}	3개월 미만	3개월 만기 이율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만기 이율	6개월 ~ 1년 미만	1년 만기 이율	1년 이상	경과기간별 이율
경과기간	적용금리 ^{주)}										
3개월 미만	3개월 만기 이율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만기 이율										
6개월 ~ 1년 미만	1년 만기 이율										
1년 이상	경과기간별 이율										
<p>특별중도해지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급여이전 포함)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수탁자의 사임 4.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 5.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 6. 가입자 사망 7. 연금지급 8.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단, 개인형IRP에 한함) 9.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 IRP에 한함) 10.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p>재예치</p>	<p>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예치 제외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재예치이율 : 재예치일 현재 공시된 이율 적용 ■ 재예치금액 :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 										

2 | 거래 조건(계속)

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 가능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 가능)		
계약해지방법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		
제한사항	통장발급 및 질권설정, 담보제공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예금자보호 여부	DC/IRP	해당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비해당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세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3 | 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4 |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마케팅지원부)

퇴직연금 정기예금 요약상품설명서

기본정보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1원 이상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 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지급	
지급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적용이율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재예치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	
제한사항	통장발급 및 질권설정, 담보제공 불가	
예금자 보호	DC/IRP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
	DB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중도해지 이율 (연%,세전)	1. 일반중도해지 금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8e6c9;">경과기간</th> <th style="background-color: #c8e6c9;">적용금리/적용률</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0.10%</td> </tr> <tr> <td>6개월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r> <td>9개월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r> <td>11개월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r> <td>11개월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적용금리/적용률	3개월미만	0.10%	6개월미만	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9개월미만	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미만	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이상	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경과기간	적용금리/적용률											
	3개월미만	0.10%											
	6개월미만	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9개월미만	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미만	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이상	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기준금리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공시실>예금>예금금리>거치식>정기예금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2. 특별중도해지 금리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 이율 적용 (단,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율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8e6c9;">경과기간</th> <th style="background-color: #c8e6c9;">적용금리^{주)}</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미만</td> <td>3개월 만기 이율</td> </tr> <tr> <td>3개월 ~ 6개월 미만</td> <td>6개월 만기 이율</td> </tr> <tr> <td>6개월 ~ 1년 미만</td> <td>1년 만기 이율</td> </tr> <tr> <td>1년 이상</td> <td>경과기간별 이율</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적용금리 ^{주)}	3개월 미만	3개월 만기 이율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만기 이율	6개월 ~ 1년 미만	1년 만기 이율	1년 이상	경과기간별 이율			
경과기간	적용금리 ^{주)}												
3개월 미만	3개월 만기 이율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만기 이율												
6개월 ~ 1년 미만	1년 만기 이율												
1년 이상	경과기간별 이율												
주)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마케팅지원부)